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25
2025.4.7.

■ 판례 동향

명의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판례 해설

■ 품목분류 동향

교통 및 속도 단속기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예상보다 강했다 … 美, 한국 상호관세율 '25%' 확정



ISSN 2799-72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 행 인 이종우
편 집 인 최흥식

총 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 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 케 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인 쇄 경성문화사

배 포 (주)아림디엠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5년 4월 7일(통권 제2125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예상보다 강했다 … 美, 한국 상호관세율 '25%' 확정

08 **Weekly News**

관세행정실무해설

18 **관세행정안내**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및 생산지원비의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

25 **질의응답사례**

수입신고수리 취소

판례동향

27 **관세판례해설**

명의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판례 해설

품목분류동향

35 **품목분류해설**

교통 및 속도 단속기의 품목분류

50 **세번 바로잡기**

면제 편물 풀오버

52 **상식 밖의 상품학**

중세 유럽, 돈 대신 후추를 냈다?

최신개정법령

54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7 **고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61 **훈령**

「원스톱 수주·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62 **입법예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예상보다 강했다 ··· 美, 한국 상호관세율 '25%' 확정

자유무역시대 저물고 관세 필두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3일 새벽 5시(현지시간 2일)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통상전쟁을 선포했다. 10%의 보편관세는 기본에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특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60여 개 국가를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했다. FTA를 맺은 협정국인데도 상호관세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에 정부와 관련 전문가, 기업인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 관세율 산정 방식 두고 논란 … 상호관세율 어떤 근거로 나왔나?

문제는 트럼프 美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선언하며 내놓은 각국의 對美 관세율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25%, 중국 34%, 대만 32%, 일본 24% 등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對美 관세율표를 들어보였는데, 해당 표에서 우리나라의 對美 관세(Tariffs charged to the USA)는 50%, 중국 67%, 대만 64%, 일본 46%였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라 對美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79%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 강봉주 부전문위원은 3일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율 계산법 추정' 브리프를 통해 "실제로는 해당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아니라 2024년 미국과 해당 국가와의 상품수지(분자)/해당 국가로부터의 미국 상품수입(분모) 수치와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024년 미국의 상품수입은 1,315억 달러, 상품수지는 △660억 달러로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50.2%로 트럼프가 들어보인 표의 50%와 동일하다. 강 부전문위원은 "해당 표의 관세율은 양국 간 실제 관세율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산정됐다"며, "개별 국가 협상에서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하거나 상품적자 자체를 축소시키길 원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상호관세 계산 및 발표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혼선이 벌어져 더욱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백악관이 게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시됐다. 이에 대해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행정명령 문서상 수치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상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26%에서 25%로 수정했다. 숫자를 수정한 이유나 이렇게 달라진 경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한국 상호관세율 25%, 리더십 부재도 한몫

주요국의 관세율은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7%), 한국(25%), 일본(24%), EU(20%), 영국(10%), 싱가포르(10%), 호주(10%) 등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동맹국인데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된 걸까? 미국이 FTA를 맺은 아시아 국가는 한국, 호주, 싱가포르 딱 3개국이다. 일본은 FTA 대상국이 아닌데도 24%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1기 시절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E) 선임연구위원은 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된 '美 상호관세 부과 관련 통상전문가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상호관세율 25%는 한국에 높은 수준으로 나온 것"이라며, "미국과의 FTA 대상국이 아닌 일본과도 비교해볼 때 한국과 일본의 對美 무역흑자가 비슷한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세미나에서는 이번 상호관세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배경으로 한국의 리더십 부재가 지목됐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워싱턴의 의사결정 구조는 톱다운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상대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 설득하고 오해를 풀면서 협상해야 가장 효과적인데 한국은 그동안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예외사항도 있다. 가령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이외에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광물은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US·Mexico·Canada Agreement) 적용 품목에 한해 예외가 적용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관세)가 아주 곧(very soon) 시작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한국의 對美 수출 1·2위 품목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조수정 교수는 "구리, 목재 품목은 이미 제232조에 근거해 조사가 시작된 만큼 곧 관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하루살이'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 세워야

다만 이번 상호관세 발표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일 있었던 무역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장,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 김형주 부원장, 법무법인 율촌 신동찬 파트너 변호사 모두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데 공감했다.

여한구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하루살이란 말도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일이 신경쓰면 큰 그림을 놓친다"며,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도 매일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응하지 말자, 큰 흐름과 중장기적 전략에 초점을 맞추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된 '美 상호관세 부과 관련 통상전문가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중인 참석자들
(출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상호관세로 업계의 충격이 크지만, '상대평가'라고 생각하고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언급한 만큼 절대적인 관세율 수치보다는 상대적인 경쟁구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무역안보관리원의 서정민 원장 또한 조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수입은 물론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사이먼 에브넷 교수는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 행사에 참석해 "현재 수출 증가율을 보면 중국은 對美 수출 시장을 모두 잃더라도 3년 내 이를 대체할 수 있다"며, "12개월 내에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70개국, 5년 내에 이전 상황으로 회복될 수 있는 국가가 145개국에 달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 원장은 "문제는 한국은 15년 정도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즉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수입공급망의 이원화도 중요하지만 수출시장의 다변화, 글로벌 경기침체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트럼프 임기 끝나면 과거로 돌아갈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뉴노멀(New Normal)'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美·中 패권경쟁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서 끝날까? 분명 몇 년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상호관세는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신동찬 파트너 변호사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최대한 절충해서 관세율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중요한 점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사안마다 개별 대응하기보다는 '對美 무역 협력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안마다 개별 대응하면 미국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소프트뱅크, 대만은 TSMC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각각 1,000억

달러 규모의 對美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우리는 이 정도 규모로 할 수 없다면, 각자도생식으로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 번 발표하기보다 투자 계획을 모아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비관세장벽, 미국産 수입을 증가시킬 품목, 對美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패키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 위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년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 미국 입장에서 본 우리의 비관세장벽이 상당 부분 나와 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서 우리 내부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세라는 거대한 해일이 세계경제에 몰려오고 있는데, 이제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영연구원의 경제정책부 김형주 부원장은 그동안 대량생산을 토대로 공급망 경쟁력을 갖추는 전략은 이제 성공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여 선임연구위원 또한 USMCA가 재개정되면 새로운 원산지 규정이 제도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급망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는 중국産 부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프리카, 중남미 수출 품목에는 중국産 부품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물론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지만 이원화가 새로운 추세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장은 수출통제 압박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트럼프 1기와 2기 통상정책의 핵심은 美·中패권경쟁인데, 기본 수단은 관세와 수출통제라는 것이다. 미국의 對中 수출통제에 공조하지 않는 국가는 관세로 압박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서 원장은 "앞으로 수출통제조치를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더 꼼꼼히 점검할텐데 개별 기업 선에서 수출통제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다른 산업까지 관세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무차별 관세공격. 미국 내에서 반응은 어떨까? 우선 미국 내 여론조사(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관세 정책과 관련해 국정 지지도는 37%에 불과하다. 신동찬 변호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이나 불법이민 문제를 지적하며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 미국 상공회의소와 학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꽤 나오는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년 후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떨어지고 물가상승 등 미국 내 경제가 악화되면 현재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전 세계 대상 10% 기본관세는 4월 5일,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부터 부과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3일 브뤼셀에서 열린 韓·美·日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韓·美·日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對美 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성은 기자 |

韓 제조기업 10곳 중 6곳 美 관세 폭풍 직격타

對美 수출기업은 물론 소·부·장 중소기업, 제3국 수출기업까지 영향

도널드 트럼프發 관세 정책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됐으나 정작 기업들의 대응은 모니터링, 비용 절감 등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2,107개社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美 관세 영향 조사' 결과,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發 관세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영향권에 속한 기업들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24.3%)과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21.7%)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제3국(중국·멕시코·캐나다 제외) 수출 및 내수기업(17.9%),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4.2%),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3.8%)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배터리(84.6%)와 자동차·부품(81.3%) 업종이 가장 많았으며, 반도체(69.6%), 의료 정밀(69.2%), 전기장비(67.2%), 기계장비(66.3%), 전자·통신(65.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76.7%), 중견기업(70.6%), 중소기업(58.0%) 순으로 집계됐다.

美 관세의 영향으로 對美 수출기업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납품 물량 감소(47.2%)가 가장 많았으며, 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24.0%),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 하락(11.4%), 부품·원자재 조달망 조정(10.1%), 납품단가 하락(6.2%)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부과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수준을 묻자 동향 모니터링 중(45.5%)이거나 생산비용 절감 등 자체 대응책을 모색 중(29.0%)인 기업이 74.5%에 달했다. 반면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현지생산이나 시장 다각화 등을 모색 중인 기업은 3.9%에 그쳤고, 대응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20.8%에 달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대응계획이 부족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영향권에 있는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대응 계획이 없다(24.2%)고 답했고, 생산비용 절감'이나 '관세 회피 대응책'을 마련 중인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26일 발표된 자동차 관세를 예로 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부품업종은 對美 수출 감소, 완성차 수출 감소로 인한 부품 수요 감소, 타 국가가 관세를 회피해 국내나 신흥시장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할 가능성 등 미국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세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다"며, "독자적인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정부가 세부 정보 공유 및 세제·수출금융 등 자금 측면의 지원, 국내 완성차 생산량이 유지되도록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금융지원, 내수판매 진작책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철강·알루미늄 對美 수출기업, '관세 정보 제공' 가장 필요

중기중앙회, 전문인력과 정보 부족한 중소기업 위한 정부 정책 대응 필요

美 행정부가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對美 철강·알루미늄을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관세 관련 정보 제공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600개社를 대상으로 실시한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3월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42.8%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로 수출이나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1.8%로 가장 많았고, 관세 리스크로 인한 물류비 상승(38.2%), 수출국 다변화 비용 발생(36.5%)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美 관세 대응을 위해 준비 중인 내용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 중 32.5%가 관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비 내용으로는 생산비용 등 자체 비용 절감 노력(52.8%), 미국 거래처와 관세 부담 논의(51.8%),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등 정보탐색(30.8%) 등으로 답했다.

관세부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관세 관련 정보 제공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류비 지원 강화(46.7%), 정책자금 지원(40.5%), 법무·회계법인 등 관세 컨설팅(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생상품을 수출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43.4%가 파생상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미국 HS Code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42.4%),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컨설팅(41.4%), 통관 절차 등에서의 서류 대행(3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 관세 부과에 대해 필요한 정부 정책 ●

(Base: 전체, n=600,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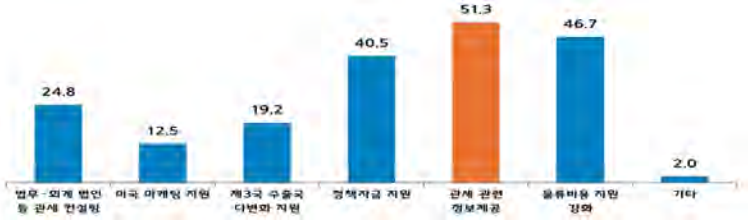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美 2025 국별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韓 정부, 우호적 평가

정부조달, 디지털 통상, 투자장벽 부문 등 신규 추가

올해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골간이 될 2025년 국별무역장벽 보고서가 공개됐다. 한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작년과 유사한 가운데 국방 절충교역, 플랫폼 규제 법안·산업기술보호법, 원전 외국인지분 금지 등이 추가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3월 31일(현지시간) 2025년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공개했다.

NTE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과 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약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한 내용이 포함된다.

USTR이 밝힌 무역장벽 유형은 전년도와 같이 14개 분야를 유지했다. 해당 분야는 ▲수입정책, ▲기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디지털 무역, ▲투자규제, ▲보조금, ▲반경쟁적 관행, ▲국유기업, ▲노동, ▲환경, ▲기타 장벽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NTE 보고서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부문 국방 절충교역, 디지털 통상부문 플랫폼 규제 법안·산업기술보호법 추가 및 데이터 현지화 재지적, 투자장벽 부문 원전 외국인지분 금지 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한다고 지적하고 1,000만 달러 이상 방산 계약 시 외국 계약업체에 절충교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의 규제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9월 한국 기업 2개사 및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외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 규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데이터 현지화는 3년 만에 재지적된 사안으로 작년 3월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상 과징금 부과 기준 확대 및 개인정보의 해외 전송 제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전에 대한 USTR 지적은 발전 분야 외국인지분 제한 외 원전에 대한 외국인지분 금지를 지적했다. 기존 보고서에서는 전력 생산과 관련해 수력, 화력, 태양광 등 비원자력 전력 생산 부문의 외국인지분 제한을 언급했으나, 올해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발전 부문을 추가로 지적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美 측과는 실무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美 상무부, 한국産 에폭시 레진 반덤핑 최종판정···
韓 업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미국의 한국産 에폭시 레진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덤핑마진 및 보조금율 최종판정 결과 한국 기업의 덤핑마진이 예비판정 대비 최대 19%가 축소됐다. 보조금율도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상정돼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3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産 에폭시 레진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덤핑마진 및 보조금율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판정 결과 한국産 에폭시에 대한 덤핑마진은 5.68 ~ 7.6%로, 보조금율은 1.01 ~ 1.84%로 산정됐다. 작년 11월 발표된 예비판정에서 덤핑마진은 16.02 ~ 24.65%였다.

에폭시 레진은 접착력이 강하고 내열성과 절연성이 우수해 선박, 자동차용 페인트 및 전자기기 등에 이용된다.

작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미국 에폭시 레진 생산기업 임시연합이 청원한 한국 에폭시 레진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국에는 한국 외 중국, 인도, 대만, 태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5개국의 보조금도 지적하며 한국産 에폭시 레진에 30.01 ~ 69.42%, 중국産 264.87 ~ 351.97%, 인도産 11.43 ~ 17.50%, 대만産 87.19 ~ 136.02%, 태국産 163.94 ~ 205.63% 상당의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상무부의 최종판정 결과로 덤핑마진과 보조금율이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결정돼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에폭시 레진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는 5월 12일경 미국 ICT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美 상호관세 부과 발표 당일, 韓 금융시장 잠잠

기획재정부는 4월 3일 美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에 따른 시장영향 점검을 위해 기재부 내 금융·외환·국채시장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 컨퍼런스 콜을 실시했다.

당일 주식·외환·국채시장은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였다.

주식시장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며 △2%대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최종적으로 소폭 하락(△0.76%)에 그쳤다.

외환시장은 장 초반 소폭 상승(0.4%)했으나,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원화는 1,467.0원(0.0%)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채권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장단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하구현 기자 |

국가핵심기술 유출, 해외서 사용될 것 알기만 해도 처벌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 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하는 국가 핵심기술 보유확인제가 신설되고, 기술 유출 시 벌금이 최대 65억 원까지 확대된다. 법규 준수 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심의절차 면제 또는 간소화 등 지원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업 등의 신청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판정했으나,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 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하는 '국가 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 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정부 승인 없이 불법으로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일 1,0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 및 정책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 벌금을 기존 최대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까지 확대하고, 처벌 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반면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들의 기술 수출승인 절차를 개선해,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심의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해 기업들의 수출심사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개별법에 따라 기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산업기술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유사 행정 절차가 단축된다.

보안 기술 지원에 국한된 정부의 예산 지원 범위도 보안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까지 확대해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인 7월 22일 전까지 개정 완료할 계획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 하구현 기자 |

지방 국제공항으로 마약 몰려 밀수 적발 건수 2년새 3배↑

관세청, 마약적발 정보 전국세관에 실시간 공유

인천국제공항의 단속 강화로 인해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우회반입 시도가 늘고 있어 관세청이 단속을 강화해 이 같은 '풍선효과'에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3월 31일 제주세관에서 '2025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는 2022년 9건(12.8kg)에서 2년만에 2024년 37건(20.9kg)으로 건수는 311%, 중량은 62%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 적발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150%(4건 → 10건), 중량은 180%(6.8kg → 19kg)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근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홍콩 등에서 출발한 여행자들이 기탁수하물이나 신변에 필로폰, MDMA, 케타민, 액상대마 등을 은닉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작년 지방 국제공항 입국여행자가 1,019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1,045만 명) 수준으로 회복함에 따라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 공항만에서 적발되는 마약적발 정보 등 우범정보를 지방공항세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우회밀수를 차단한다. 또한 지방 국제공항의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의심물품의 적극적인 개장·파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마약은닉 의심자의 신변 검사는 더욱 강화한다.

● 2022년~2025년 3월 지방 국제공항 마약밀수 적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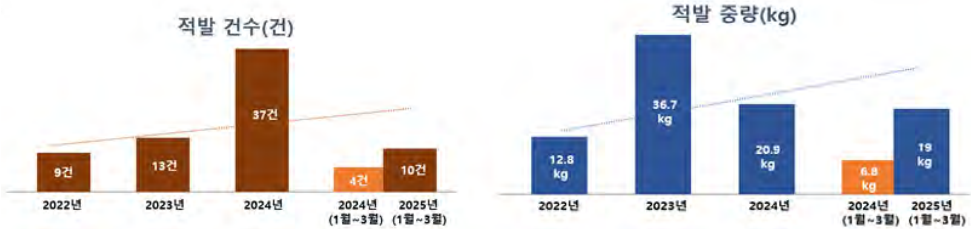

출처 : 관세청

그밖에 현재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파괴검사 글로브박스 등 첨단장비가 구비된 마약집중검사실이 인천국제공항에만 설치돼 있어 이를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가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단속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지방공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분석, X-Ray 판독, 마약검사 착안사항 등 인천공항세관의 전문적인 적발 기법을 교육해 현장단속 역량을 높인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마약밀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마약 밀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은 기자 |

식물검역에 전자태그 방식 도입 ··· 검역본부 디지털실험실 운영

시료 관리 자동화 및 정밀검역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식물 정밀검역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다. 4월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영남지역본부 정밀검역실험실과 김해공항, 부산신항 등에 구축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장 검역에서 의심돼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진행했지만, 시료 반입·반납·폐기와 실험 데이터 기록 등 일부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져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검역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선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반도체칩이 내장된 태그 등의 저장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로 읽어내는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활용해 시료의 반·출입을 자동으로 인식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정밀검역 신청 대상인 경우 RFID 태그를 발행해 시료 봉투에 부착한 뒤 카트에 실어서 RFID 인식 가능한 공간을 지나면 자동으로 시료 반입과 반납이 되는 방식이다.

'정밀검역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은 검역 대상 품목별 실험 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험기기 7종 21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중앙서버에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 검사결과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 RFID 기술을 활용한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올해 1~2월 2개월간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 결과 RFID 인식률은 93%(1,531건 중 1,421건)로 양호했으며, 소요시간은 2024년 검사의뢰 8,844건 기준 약 4,422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의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전재용 연구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 도입으로 시간이 단축되고 오류는 줄어들었다"며 식물검역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 김성은 기자 |

동물용의약품 2035년까지 산업 3배·수출 5배 키운다

농식품부 R&D 강화, 수출 지원 확대 등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발표

동물용의약품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자 정부는 2035년까지 국내 산업 규모는 4조 원, 수출액은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등 동물용의약품 수요는 확대되고 있지만, 국산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오리지널 제품과 신흥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점차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전망이 어두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023년 1조 3,000억 원에서 2035년 4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023년 3,000억 원에서 2035년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백신,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려동물용 의약품,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첨단바이오의약품처럼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전략품목과 관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신약 품목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리는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신속허가(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허가 규제 혁신으로 산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규제법인 「약사법」 하위의 시행규칙으로만 운영돼 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별도의 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유망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수출 품목 개발 및 수출국 인허가 등에 필요한 기업 지원 예산을 지속해서 확대해 수출 역량을 강화한다. 동물용의약품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농식품 펀드와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 유입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켜 신약 및 신기술 개발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GMP는 2004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제조·수입업체가 유통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부작용, 이상 반응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안전관리 담당자를 의무화하며, 5년 단위 품목허가 갱신제를 도입한다.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 대상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해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해요소가 확인되면 수입 중단, 시정 요구 등 조처하는 등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국내산 표기' 밀가루,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재배환경에 따라 밀가루에 남아있는 유·무기성분 분석 통해 외국산 판별 기술 개발

국내산과 외국산 밀가루의 원산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국 밀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새로운 밀가루 원산지 검정법을 개발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지난 30여 년간 돼지고기·소고기, 배추김치 등 국민 소비가 많은 주요 품목에 대해 이화학분석, 유전자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술을 활용한 원산지 검정 방법을 개발해 왔다. 이화학분석은 기후·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의 영향에 따른 원산지 간 유기성분과 무기성분 차이를 이용해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계 판별법을 활용해 원산지를 검정하는 방식이다.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는 국내산과 외국산 시료의 유기성분에 대한 흡광에너지의 스펙트럼 차이를 이용해 원산지를 검정하며, X선 형광분석기(XRF)는 무기원소별 고유의 형광 X선을 활용해 국내산과 외국산 시료에 함유된 무기성분의 종류와 함량 차이로 원산지를 검정하는 장비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 김대중 연구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밀가루에 남아있는 유기성분과 무기성분을 분석해 원산지를 판별하는 방법"이라며, "기존에는 밀가루 원산지를 구분하는 기술이 전혀 없었지만, 이번 기술 개발로 앞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밀가루 원산지 판별 모식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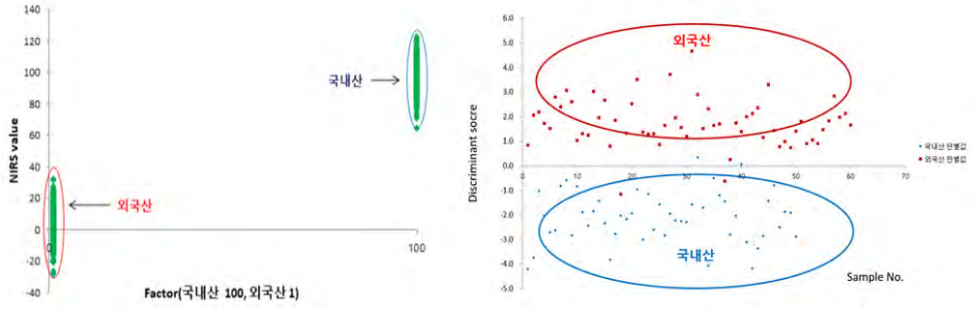

(좌) 근적외선분광분석기, (우) X선 형광분석기를 활용한 밀가루 원산지 검정법(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은 이번 원산지 판별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수입 밀가루의 국내산 둔갑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국내 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한국 밀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우리 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산 밀가루는 100g당 492원, 외국산 밀가루는 100g당 235원 수준이다.

농관원은 이번에 개발된 원산지 검정법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수입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소비기한 '2월→7월'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A社는 튀르키예産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작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차례에 걸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으로 교체한 뒤 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9,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社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스페인産 올리브유를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시해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톤(3,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社는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플라스틱 뚜껑에는 레이저 각인기로, 외포장 박스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기한을 변조했다.

식약처는 압류한 위반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이 전량 폐기하고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하도록 요청했다.

'2025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모집 시작

관세청이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공모 부문은 아이디어 기획(관세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관세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모바일 앱·웹 등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다. 관세청 공공데이터(data.go.kr),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unipass.customs.go.kr]에 개방된 공공데이터가 활용 대상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7월 20일까지로 관련 문의 및 서류 제출은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042-481-3278, customsdata@korea.kr)에 할 수 있다.

관세청·해경청, 강릉 입항한 멕시코發 무역선서 코카인 역대 최대 규모 적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 선박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규모의 마약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관세청과 해경청에 따르면, 전날인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에 마약이 은닉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관세청과 해경청은 정보를 입수한 직후 합동 검색 작전을 수립, 선박 규모와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2일 A선박이 입항한 직후 합동 검색팀은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을 실시,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2톤에 육박하는 마약 의심 물질이 나왔다. 간이 시약으로 긴급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고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로 중량을 특정했다.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마약밀매 조직과 연관성를 배제하지 않고 FBI, HSI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및 생산지원비의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EU FTA
질문	한국의 수입업체가 귀금속촉매 원재료인 Palladium(팔라듐, 제71류)을 미국에서 구매해 독일로 공급한 뒤 독일 수출업체는 귀금속촉매(제3815.12호) 제작 후 인보이스(Invoice, 송장)에 촉매제작비용만 기재해 한국으로 수출한 상황입니다. - 과세표준(C)은 촉매제작비(A) + 원재료비(B)로 산정 1. 귀금속촉매(제3815.1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나요? 2. 전체 금액 C에 대해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1. 귀금속촉매(제3815.1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독일에서 제71류에서 제38류로 세번변경됐으므로 한·EU FTA의 원산지 상품입니다. 2. 인보이스에 촉매제작비용만 기재된 경우도 독일로 원산지가 변경됐으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원산지 결정기준

(1) 개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FTA 적용 요건은 1. 거래당사자 요건, 2. 품목 요건, 3. 원산지 상품 요건, 4. 절차 요건, 5. 운송 요건(직접운송원칙)이 있지만, FTA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3. 원산지 상품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협정상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FTA 실무상 원산지 상품 요건에 관한 부분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더 깊게 봤을 때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기준(General Rules)이 존재한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정해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2) 한·EU FTA 원산지 판정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제품(상품)으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조(원산지 제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가. 제4조의 의미상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나.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자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총 3가지인데,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완전생산품),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해 그 당사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불완전생산품), 당사자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원산지 재료생산품)으로 나뉜다.

완전생산기준은 대부분 1차 산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FTA 활용 실무상 공산품들은 완전생산기준 자체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원재료 내역을 구성할 때 모든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먼저 받지 않는 FTA 실무상 원산지 재료생산품 규정을 통한 원산지 판정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불완전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가장 많이 있으며,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된 불완전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에 따라 판단한다. 여기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은 완전생산기준(WCO, Wholly Obtained Criterion), 세번변경기준(C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과 부가가치기준(VAC, Value Added Criterion), 특정공정기준(SPC, Specific Process Criterion, 가공공정기준이라고도 한다)으로 나뉜다.

그 중 세번변경기준은 상품과 원재료 세번의 상이한 정도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기준은 수출물품에 대한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과 역외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RVC법(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과 MC법(iMport Contents Method)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가공공정기준은 섬유나 석유화학과 같은 특정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적용되는 협정, 원산지 판정 대상 품목의 HS Code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개별 품목(HS Code 기준)에 대해 원산지 상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만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단일 기준),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조합(결합)돼 해당 기준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유형도 있다[조합(결합) 기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제시하되, 한 가지 기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 있다(선택 기준).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부분은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귀금속촉매(제3815.12호)와 세번변경기준

HS Code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815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시작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을 분류하며, 이러한 공정을 지연시키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815.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서포트된(supported) 촉매'로,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서포트(support) 위에 입혀져 있는 하나나 둘 이상의 활성(active)물질로 조성되어 있거나[서포트된 촉매(supported catalyst)라고 불린다] 활성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들 활성물질은 특정의 금속·금속산화물·그 밖의 금속화합물이나 이들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 이들 촉매용 금속이나 화합물에 주로 사용하는 금속은 코발트·니켈·팔라듐·백금·몰리브데늄·크로뮴·구리·아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중 제3815.12호에는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서포트된 촉매'가 분류된다.

한·EU FTA에서 제3815.12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협정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
한·EU FTA	제3815.1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한·EU FTA에서 제3815.1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MC법)

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례에서는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절차에 관한 부분을 문의하고 있다.

통상 해당 물품의 가공도 등에 따라 세번(HS Code)을 부여하게 되며, 세번이 바뀔수록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뀌는 원리를 이용해 비원산지 원재료의 세번과 완성물품의 세번이 상이하면 원산지(역내산)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세번변경기준'이라고 한다. 세번변경기준은 변경된 세번(HS Code)의 수준(정도)에 따라 2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등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의 2자리, 4자리, 6자리를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협정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으로 표현하며, '비원산지 재료에(non originating materials)' 한해 세번변경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의 대상인 한·EU FTA의 경우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규정에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돼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약어	설명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 (Change of Chapter)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Code와 물품의 HS Code를 비교하여 앞의 2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Code와 물품의 HS Code를 비교하여 앞의 4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Code와 물품의 HS Code를 비교하여 앞의 6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질문에서는 이번 호의 대상인 귀금속촉매의 한·EU FTA 제3815.12호 원산지 결정기준인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적용 관련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수입업체(한국)는 귀금속촉매 원재료인 Palladium(제71류)을 미국

에서 구매해 독일로 공급 → 독일 수출업체는 귀금속촉매(제3815.12호) 제작 후 인보이스에 촉매제작비용(A)만 기재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과세표준(C)은 촉매제작비(A) + 원재료비(B)로 산정했는데, 질문 사항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 귀금속촉매(제3815.1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전체 금액 C에 대해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관련

일단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재료는 미국에서 구매한 Palladium(제71류)이며 실제 독일(EU)에서 제조된 제품(상품)은 귀금속촉매(제3815.12호)다. 원재료로 사용된 Palladium은 미국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세번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한다. 실무적으로 각 당사자의 원산지가 아닌 재료뿐 아니라, 당사자 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도 이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국내에서 생산됐음을 확인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없다면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한·EU FTA상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인 Palladium(제71류)과 제품(상품)인 귀금속촉매(제3815.12호)의 HS 4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이 이뤄질 수 있다. 물론, 추가로 투입되는 비원산지 원재료가 있다면 해당 재료들도 제3815호와 다른 HS Code로 분류돼야 할 것이다.

추가로 제3815호에 분류되는 원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제품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최소허용기준 적용).

이는 한·EU FTA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제2항 나목(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2의 목록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초과되지 아니한다)이 적용된 것이다.

관세청 답변에는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독일에서 제71류에서 제38류로 세번변경 됐으므로 한·EU FTA의 원산지 상품이 됐다고 안내돼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강조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제3815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중략> …(C) 금속이나 금속 합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세한 가루·직조한 거즈 등의 모양을 하고 있는 촉매(제14부나 제15부)”라고 설명돼 있다.

또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가공이 이뤄져야 한다. 한·EU FTA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의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관세청의 답변에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귀금속촉매)는 충분한 가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조건 세번변경기준만 충족됐다고 원산지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안되고, 각 협정에 규정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3) 생산지원비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

귀금속촉매에 대한 과세표준(C)은 촉매제작비(A) + 원재료비(B)로 산정했는데, 인보이스에 기재되지 않은 원재료비(B)에 대해서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있다.

인보이스에 촉매제작비(A)만 기재된 것으로 봐 수입업체(한국)는 귀금속촉매 원재료인 Palladium(제71류)을 미국에서 구매해 독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의 목적상 이는 생산지원(Assists)에 해당되며, 만약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Value)에 생산지원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관련 생산지원비를 가산해야 한다. 매수인(수입자)가 무료로 매도인(수출자)에게 생산지원을 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① 완제품에 대한 매수인(수입자)의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외국 매도인(생산자)에게 부분품 또는 구성품을 제공하거나, ② 매수인이 부분품·구성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직접 부분품 또는 구성품을 구매해 외국의 매도인(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관세법」에서는 이러한 생산지원비의 가산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송품장에 촉매제작비용만 기재된 경우도 독일로 원산지가 변경됐으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인보이스 가격 외의 생산지원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수입물품의 생산지원비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한 관세청의 사례를 추가로 더 살펴보겠다.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생산지원비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므로 해당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생산지원으로 생산된 모든 수입물품이 같은 협정규정에 따라 원산지로 충족된 경우에만 생산지원비 전액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수입물품(금형)의 과세가격에 포함된 생산지원비도 사후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법」)」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된 생산지원비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즉, 제6조에 관해 ①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일 것, ②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③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②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에 대한 요건에 따라 해당 물품이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원산지 상품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FTA관세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뿐 아니라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대해서도 생산지원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지원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적용 가능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 원산지 상품이 됐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통관 / 수입신고수리 취소

수입신고 취하가 아닌 수입신고수리 취소도 화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됐을 때는 「관세법」 제250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수리 후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신고서 처리를 위한 결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의 각하나 수입신고수리 취소는 수입화주 및 신고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원산지 / 원산지표시

중국산 물품 뒷면에 'Made in China'로, 앞면에는 'Italian Style'이라고 표시됐는데, 원산지표시에 문제 없을까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라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고시 [별표 8] 원산지 오인표시 유형 예시에서는 원산지표시 이외에 'Italian Mode', 'Brand by Korea', 'Licensed by 회사명 Japan' 등과 같이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를 원산지 오인표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alian Style' 문구는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용어에 해당되므로, 'Italian Style' 표시 근처에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명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8] 원산지 오인표시 유형 예시(제28조 관련)
1.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 등
- ‘Italian Mode’, ‘Brand by Korea’, ‘Licensed by 회사명 Japan’ 등으로 표시
- 원산지가 중국산인 의류의 목부분 라벨에 상표와 함께 ‘France’로 표시
-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토종돼지’를 표시
- 중국산 골프가방 겉면에 상표권자 국적인 ‘Australia’를 상표와 함께 크게 표시
-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실제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 그 포장에 ‘Made in Taiwan’ 표시(소비자가 구매 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품목분류 / 핸드벨 세트의 HS Code

손에 쥐고 흔들어 음율을 내는 타악기인 핸드벨 세트는 어느 호에 분류되나요?

문의하신 물품이 일반적인 핸드벨의 경우로 ‘타악기[예 :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9206.00-9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품목번호			품명
9206			타악기[예 :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9206	00		타악기[예 :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9206	00	1000	북
9206	00	2000	목금
9206	00	3000	심벌
9206	00	4000	캐스터네츠
9206	00	5000	마라카스(maracas)
9206	00	6000	탬버린
9206	00	9000	기타

수입 / 수입신고필증 발급

수입신고필증은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무소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관세법」 개정(2025. 1. 1.)으로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신고인뿐만 아니라 화주도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 공지사항 메뉴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명의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판례 해설

권 종 열 | 서울세관 심사총괄2과

1. 처분 경위

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평택세관장에게, ① 2015. 8. 24. 수입자를 D, 사용소비자를 H로 해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깨 36톤(이하 '이 사건 제1 원재료'라 한다)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신고를 했고, ② 2015. 2. 27. 및 2015. 5. 14. 수입자를 E, 사용소비자를 H로 해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깨(이하 '이 사건 제2 원재료'라 한다)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신고를 각각 했다.

나. D와 E는 H 공장에서 이 사건 제1, 2 원재료를 가공해 참깨가루(이하 '이 사건 완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한 후 이를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관세영역)으로 반출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제1208.90-000호(기본세율 3%)로 품목분류하고 원고들 명의로 수입신고를 했다.

다. 피고는 2018. 9. 18.부터 2018. 12. 3.까지 원고들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H 명의로 반입신고된 이 사건 제1, 2 원재료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들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자유무역지역 내 H에 지정된 구역에서 이 사건 제1, 2 원재료를 활용해 이 사건 완제품을 직접 제조·가공해 국내에 수입·판매했다고 판단하고, 이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해당해 '입주기업체 외의 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 원재료를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시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했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2. 19.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관세를 각 부과·고지했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관세 부과처분을 통칭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9. 6. 13.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 기각했다. 원고들은 2019. 9. 10.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① 2020. 6. 22. "이 사건 제2 원재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B이고,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체가 자기 소유의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 B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② 2020. 6. 30. "원고 A가 이 사건 제1 원재료의 실제 소유자이고, H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이 사건 제1 원재료를 직접 가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마. 이에 원고들은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했고(서울행정법원 2021. 4. 2. 선고 2020구합64132 판결), 2심에서는 원고 A는 패소, B는 승소했으며(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누41336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대법원 2022. 5. 26.자 2022두34708 판결).

2. 원고 주장의 요지[1)]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자유무역지역에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 A이고, 원고 B는 원고 A에게 명의만 대여했을 뿐 이 사건 제2 원재료의 반입·가공이나 이 사건 완제품의 제조·생산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B가 이 사건 제2 원재료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B를 납세의무자로 해 관세를 부과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3. 대상 판결의 요지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2 원재료를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원고 B로서 과세요건이 충족됐다는 데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므로, 원고 B가 제2 원재료에 관한 납부의무자임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제2 원재료 수입 당시 원고 B는 H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 등 통관 관련 업무와 총무·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가 이 사건 제2 원재료 구매나 반입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 B는 2012. 9. 4. 상호 'E', 종목 '농산물, 식품,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E는 이 사건 자유무역지역에서 혼합양념 등을 제조·생산했다. 원고 A는 원고 B의 아버지로, 2015. 5. 4. 상호 'D', 종목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 무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 사건 자유무역지역에서 E와 동일한 품목을 수입해 제조·생산했다. E 개업 당시 원고 B가 20대 중반이었고 위 원고가 H에서 수행했던 직책이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춰, 원고 B가 직접 E를 설립해 운영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원고 A가 E를 운영하다가 이후 D와 E를 함께 운영했다고 보는 것이 좀

1) 이번 호에서 다루고자 하는 쟁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다.

더 자연스럽다.

③ 원고 A는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정487호)에서 2017. 12. 20. “2013년 7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자유무역지역에서 위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체인 D 및 E를 운영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 A의 항소가 기각돼(수원지방법원 2018노220호) 2018. 9. 29.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④ 이 사건 제2 원재료의 운송과 수입에 관한 서류(물품공급계약서·임가공계약서, 선하증권·송품장, 해상운송비 지급청구서, 수입신고 확인증 등)가 E 명의로 작성돼 있고, 이 서류에 원고 B가 E 대표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고 A가 원고 B 명의로 E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거래 관련 서류 역시 이와 같은 명의대여에 부수해 원고 B 명의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⑤ E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제2 원재료의 수입대금·통관비용 등이 지급되고, 이 계좌로 이 사건 완제품의 판매대금이 입금되기는 했다. 그러나 원고 A가 원고 B 명의로 E 관련 거래를 하면서 원고 B나 E 명의 계좌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가 이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제2 원재료의 수입이나 이 사건 완제품의 판매에 관여했다거나 이 사건 완제품의 판매수익이 원고 B에게 귀속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해설

가. 관련 법령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ⅰ)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ⅱ)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물품수신인, ⅲ)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종전에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서 현행과 같이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변경됐으나, 이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큰 관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2)]

한편, 「관세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이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관련 조문이 신설됐는데,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은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인 것이 원칙이지만, 관세를 포탈해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단순명의대여자임을 내세워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불복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므로 납세의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형식주의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7누23117 판결[3]).

舊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舊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 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나. 관세의 납세의무자 관련 법리 및 증명책임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2) 관세청,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8. 1면 ; 권형기, '「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집> 제36권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191 ~ 192면

3)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19. 5. 9.자 2019두33477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돼 확정됐다.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다.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관세의 납세의무자 개요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다(「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규정의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에 불과한 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때의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4], 「관세법」에 명문으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래에는 「관세법」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2002두8442 판결에서 「관세법」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인다.[5]

또한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02두8442 판결에서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해당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실제 소유자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4) 소순무·윤지현, <조세소송>, 조세통람, 2022. 804면

5)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8591 판결 등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참조).

2) 대상판결에 대한 의견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원고 A(D 대표, 원고 B의 아버지), 원고 B(E 대표)는 이 사건 제1, 2 원재료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H와 형식적으로만 물품공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2 원재료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다음 자유무역지역 내 H에 지정된 구역에서 해당 원재료를 활용해 이 사건 완제품을 제조해 이를 원고들 명의로 수입신고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대상판결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 B가 이 사건 제2 원재료의 실제 소유자라는 데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 B가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일견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인 H와 형식적으로 물품공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2 원재료를 반입해 자유무역지역 내 H에 지정된 구역에서 해당 원재료를 활용해 이 사건 완제품을 제조한 것이고, 원고 B가 H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수입통관, 총무 업무 등을 담당했다면 원고 B가 이 사건 제2 원재료의 구매, 반입 등을 포함한 수입통관 제반 업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상식에 부합한다.

또한 원고 B가 2015년 당시 20대 중반으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할만한 충분한 나이이고 실제 H에서 과장이라는 직책으로 수입통관,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한바, 원고 B의 나이와 H에서 수행했던 직책이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원고 B가 아버지인 원고 A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기보다는 오히려 원고 B가 원고 A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E를 실제 운영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편, 원고 A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D 및 E를 운영해 사업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속돼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6]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A가 E의 실제 운영자 여부가 쟁점이 돼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이와 같이 적시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더욱이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는데[7], 대상판결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원고 B가 E 대표이고, 이 사건 제2 원재료의 운송과 수입에 관한 서류(물품공급계약서·임가공계약서, 선하증권·송품장, 해상운송비 지급청구서, 수입신고 확인증 등)가 모두 E社 명의로 작성돼 있고, E社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제2 원재료의 수입대금·통관비용 등이 지급되고, 위 계좌로 이 사건 완제품의 판매대금이 입금됐다. 이와 같이 원고 B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토대로 대법원 2002두8442 판결에서 제시한 관세의 납세의자로서 실제 소유자 판단기준인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해당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살펴보면, 오히려 원고 B가 이 사건 제2 원재료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만한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B가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일견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대상판결의 결론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3) 대상판결 후 재처분 가능 여부

덧붙여서, 대상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2022. 5. 26.자 2022두34708 판결로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판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하는데, 이에 더해 과세관청이 원고 A를 이 사건 제2 원재료의 실제 소유자로 봐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해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바[8], 대상판결에서 원고 B를 이 사건 제2 원재료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했으므로 이후 그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롭게 원고 A를 실제 소유자로 봐 과세처분할 수 있어 보이기는 한다.

다만, 이 사건 제2 원재료는 2015. 2. 27. 및 2015. 5. 14.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됐으므로

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등

7)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8)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등

대상판결이 확정된 날(2022. 6. 3.[9])에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제척기간(5년)은 이미 도과한바[10],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에 같은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만이 가능하다. 즉, 소위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만 가능한 것이다.[11]

그런데 과세권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해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취소하고 있는 이 사건 제2 원재료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는 원고 B이고 원고 A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바, 이 사건 제2 원재료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A라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21조 제2항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라 원고 A에게 새롭게 과세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2023. 12. 31. 「관세법」을 법률 제19924호로 개정하면서,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 제21조 제3항에 "판결 등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 관세부과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해[12], 해당 조문의 시행일(2024. 1. 1.) 이후 확정되는 판결 등에 따른 재처분 시에는 실제 소유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가능할 것이다.[13]

---

9) 대법원 2022. 5. 26.자 2022두34708 판결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됐고, 2022. 6. 3.에 판결문이 송달돼 같은 일자에 확정됐다.

10) 이 사건 제2 원재료는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이므로(1. 처분경위 참조),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날(2015. 2. 27. 및 2015. 5. 14.)의 다음 날이다.

1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대법원 2002. 1. 5. 선고 2001두9059 판결

12) 「관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24호로 신설) 제21조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3) 「관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24호) 부칙 제4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 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교통 및 속도 단속기의 품목분류
- WCO HS위원회 결정 -

김 진 용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Ⅰ. 개요

단속카메라는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며, 도로 위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돼 감시자 역할을 한다.[1)]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특정한 장소에 고정하고 과속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비로, 최대 시속 250km까지 인식 가능하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도로 노면에는 20 ~ 30m 간격으로 센서를 매설한다.

차량이 센서가 형성한 감지선을 지나가면, 센서가 차량의 이동시간을 측정해 주행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속 여부를 판단한다. 단속카메라를 뒤늦게 발견해 급격히 속도를 줄였지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센서가 이미 과속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 고정식 카메라 단속 원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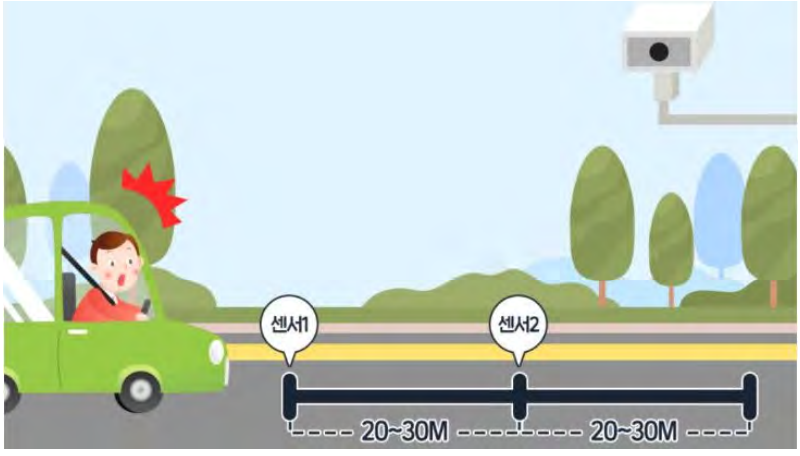

출처 : 도로교통공단

반면,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다. 경찰 조명을 설치한 박스 안에 주로 위치하며, 경찰이 필요에 따라 곳곳에 설치된 박스로 장비를 이동해 운영하므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불린다.

1) 출처 : IT동아(2024. 10. 10.), 단속카메라 종류와 원리 살펴보니

해당 장비는 모든 차선을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측정거리는 1km 이상이다. 1초에 400여 개 레이저를 발사한 후 차량에 레이저가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한다.

● 이동식 카메라 단속 원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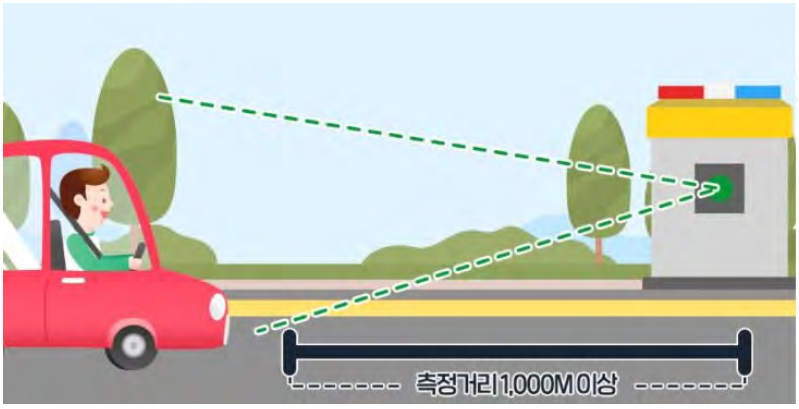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구형과 신형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구형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흔히 스피드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레이저 빛이 아니라 전파를 이용하는 장치다.[2)]

신형 장비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레이저 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이 레이저 신호가 자동차에 반사돼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재서 자동차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레이저 신호의 시간 간격 동안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통해 차의 속도를 알게 된다.

이와 같이 교통 단속카메라는 여러 가지 원리로 작동한다. 특히 레이저를 활용하는 이동식 카메라의 품목분류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레이저 방식의 이동식 카메라에 대한 WCO HS위원회 결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쟁점 사례

□ 물품 설명

- 카메라를 통해 위반 시의 비디오 화상과 정지화상을 촬영하는 과속 단속 레이저기기

- LCD 화면을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와 속도·거리 등의 측정값을 보여줌

2) 출처 : 비즈한국(2017. 8. 16.), [사이언스] 과속 단속카메라의 과학

- 레이저를 이용해 차량의 속도 및 차량 간 거리를 측정

- 위반 데이터 원거리 전송 가능

● 쟁점 물품 ●



ㅇ 쟁점세번 : 제8517호(통신기기)
제8525호(카메라)
제8528호(모니터)
제9029호(속도계)
제9031호(기타 측정기기)

※ 제16부 주 제3호와 제90류 주 제3호의 복합다기능기계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주 기능에 따라 쟁점세번을 도출함.

ㅇ 제8517호 논지

제8517호에는 '기타 통신기기'가 분류되고, 본건 물품의 주요 기능인 교통 위반 데이터를 원거리 전송하는 기능은 통신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을 제8517호로 분류함.

ㅇ 제8525호 논지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본건 물품의 주요 기능은 위반 시 비디오 화상과 정지화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을 제8525호로 분류함.

ㅇ 제8528호 논지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가 분류되고, 본건 물품의 주요 기능은 위반 시의 고해상도 이미지와 속도 및 거리 등의 측정값을 보여주는 모니터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을 제8528호로 분류함.

ㅇ 제9029호 논지

제9029호에는 '속도계'가 분류되고, 본건 물품의 주요 기능은 레이저를 이용한 차량의 속도 측정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을 제9029호로 분류함.

ㅇ 제9031호 논지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 기기'가 분류되고, 본건 물품의 주요 기능은 카메라로 수집한 이미지를 분석해 차량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등 기타의 측정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을 제9031호로 분류함.

ㅇ 논의 결과

쟁점물품은 WCO에서 논의 후 제9029호로 결정됐다. 해당 결정은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2(HS품목분류의견서)로 국내 수용됐다.

9029.20	**2. 교통 및 속도 단속 레이저** 영상과 측정 결과(속도, 거리, 시간 등)를 표시하는 화면을 갖추고 있으며, 비디오와 정지 이미지를 캡처하는 디지털 카메라, 추가 처리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 카드가 있다. 손에 쥐거나 상자에 설치하거나 삼각대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레이저를 이용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다. 선택사항으로 차량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및 제6호 적용**



Ⅲ. 사례 해설

지금까지 특정 교통 및 속도 단속 레이저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수출입 화주,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가 수출입 통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단속 레이저 관련 품목분류 결정의 세부사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쟁점물품의 주 기능 관련 분류 논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둘째로 제8517호(통신)와 제8528호(모니터) 기능이 보조적인 기능으로 인용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⑴ 첫째, 쟁점물품의 주 기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쟁점물품은 다음과 같이 복합다기능기계로 본다. 실무적으로는 제16부 주 제3호의 복합기계와 다기능기계는 단일기계 또는 주 기능 기준으로 품목분류하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기준이므로 쟁점물품이 복합기계인지, 다기능기계인지 구별할 실익이 없다.

쟁점물품의 경합세번은 제8517호, 제8525호, 제8528호, 제9029호, 제9031호이므로 제16부 주 제3호와 제90류 주 제3호에 따라 주 기능에 해당하는 호를 찾아야 품목분류할 수 있다.

> ■ **제16부 주 제3호**
>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 ■ **제90류 주 제3호**
> 3.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

하지만 쟁점물품과 같이 기능이 다양한 기계는 주 기능을 찾지 못하는 경우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호로 분류할 수도 있다.

> ■ **제16부 해설서 총설**
>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 예를 들면, 제8425호에서 제8430호까지의 여러 호·제8458호부터 제8463호까지의 여러 호·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여러 호에 분류 가능한 다기능기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 <후략>

쟁점물품의 주 기능은 제8525호(카메라)와 제9029호(속도계)로 압축된다. 카메라로 수집한 이미지를 분석해 차량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등의 기타 측정기능인 제9031호는 제90류의 잔여 호이므로 주 기능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제8525호 카메라 기능은 위반 시 비디오와 정지 이미지를 캡쳐해 교통 단속과 범칙금 납부 등에 활용하므로 주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쟁점물품은 다음 제8525호 해설서와 같이 영상을 포착, 매체에 녹화하며 액정표시화면(LCD)를 갖추고 있어 카메라에 해당한다.

■ 제8525호 해설서

(B)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

이 그룹에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 <중략> …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나 매체에 녹화한다(예 : 자기테이프·광학식 매체·반도체식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인쇄기·텔레비전이나 그 밖의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output terminal)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이러한 외부연결기기로부터의 아날로그나 디지털 영상파일을 내부에 녹화하기 위한 입력터미널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viewfinder)나 액정표시 장치나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많은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서나 이미 녹화된 화상을 재생할 때 스크린으로서의 화면 역할을 하는 LCD를 갖추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레이저 발신부와 수신부를 갖춰 레이저를 발신한 후 수신한 시간까지 값을 가지고 이동 거리에 대비해 속도를 측정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제9029호 해설서상 속도계 내용에 부합한다.

더구나 해설서상 속도계는 속도 측정 외에 도표기록장치, 주행거리기록장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제9029호 해설서

(B)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속도계와 회전계는 회전·**속도**·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A)의 적산(積算)회전계나 생산량계와 구별된다(예 : 분당 회전수·분당 마일 수·시간당 킬로미터 수·분당 미터 수). 이러한 계기는 보통 차량(자동차·모터사이클·자동차·기관차 등)이나 기계(전동기·터빈·제지기계·인쇄기계·직물기계 등)에 장착되어 있다.

… <중략> …

이 호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고정식이나 휴대식·단순이나 복합기능(예 : 최고나 최저)·차동장치(두 개의 속도의 차를 퍼센트로 지시하는 경우)를 가질 수 있으며, 누적계나 시간계나 **도표기록장치가 결합된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동시에 **속도·주행거리·작동과 정지시간을 기록하는 기기도 포함한다**.

물론 WCO HS위원회에서는 투표 방식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 시 주 기능에 대해 제8525호와 제9029호 중 투표를 통해 제9029호로 결정했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HS품목분류의견서상 품목분류 근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의견서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이 기재돼 있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최종호 분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 국가에서 쟁점물품은 위반 이미지 캡처 기능인 제8525호의 카메라보다는 속도 위반을 측정하기 위한 제9029호의 속도 측정을 주 기능으로 봤음을 알 수 있다.

물론 WCO에서 본건 물품을 논의하기 전에도 다음과 같이 유사한 물품에 대해 제9029호 또는 제9031호 등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한 사례도 있지만, 이번 WCO 결정으로 인해 통일되게 교통 단속카메라를 제9029호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 폴란드 사례

기준년도	2019년
참조번호	PLBTIWIT-2019-001526
시행일자	2019년 10월 22일
결정 세번	제90292038호
물품 설명	**A laser device designed to measure the speed of vehicles involved in road traffic and to record offenses on the road.?The product is equipped with: a laser measuring system, a camera, a GPS positioning system, a real-time clock, a computing unit and a memory module for saving a series of measurements**.?The lens for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the laser beam, the camera lens and the viewfinder are located in the front of the device.?The rear panel of the laser speedometer **has an LCD display**, menu and power buttons.?On the side of the camera there are **USB inputs and a memory card slot (2 GB and larger)**.?Batteries are placed in the handpiece and a trigger button is installed to initiate the measurement.?The speedometer kit includes: computer connection cable, chargers, 2 batteries and tripods.?The set is placed in a transport case.?Dimensions of the laser meter (in cm) : 31.7 x 21.0 x 9.8;?weight 1.5 kg.?Distance measurement range up to 1200 m;?speed measurement range up to 320 km / h.
분류 사유	The classification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ules 1, 3 (b), 5 (a) and 6 of the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bined Nomenclature and on the basis of **Note 3 to Chapter 90 and Note 3 to Section XVI** and is consistent with the wording of 9029 and subheading 9029 20 38 as applicable to other speed indicators and tachometers.?The classification is consistent with item (2) of the comment to heading 9013 and item (B) of the comment to heading 9029 in the 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System.

이슈 장소	Warszawa
키워드	FOR VEHICLES, SPEED INDICATORS, LASER POINTERS, CAMERAS, FOR ROADS
이미지	

□ 미국 사례

기준년도	2002년
참조번호	NY H88903
시행일자	2002년 3월 19일
결정 세번	제9031.49.90호
시행기관	New York
Category	Classification
회신	RE: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LaserCam NT

Dear Mr. Bowers :

In your letter dated December 11, 2001, on behalf of American Safety (Sun Industries, Inc.), you requested a tariff classification ruling on the LaserCam NT. We returned your request for a classification ruling because additional information was required. In your letter dated February 22, 2002, additional information was supplied. The LaserCam NT software specifications and Operator's Manual were submitted with your current letter.

물품 설명

The LaserCam NT for which you are requesting a ruling **consists of a dual digital image capture device and Laser Gun LTI 20-20 connected to a field computer**. You have indicated in your letter that **the dual digital image capture device works by monitoring traffic in real video time**, and **takes two still images simultaneously when the laser gun signals that the vehicle is travelling at or in excess of the pre-set capture speed** set into the software. Two digital cameras in tandem are attached to the laser gun. **The cameras are joined to the laser gun by coaxial cable and mounted together as one unit.** You have stated that the image capture device cannot operate independently of the laser gun. The cameras/laser gun unit is joined to a computer via a coaxial cable. **The images captured by the cameras are**

immediately displayed on the computer screen, along with imbedded data which shows the date and time of the incident, speed zone programmed into the computer by the operator, speed of the vehicle, operator code, site code and infringement number. You have indicated that the camera and computer are reliant on the laser gun, as images will only be recorded and stored if the pre-set capture speed is reached or exceeded.

Classification of merchandise under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is governed by the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s) taken in order. The LaserCam NT is a **composite article that is classifiable under more than one heading, each equally specific.** It is the opinion of this office that **there is no essential character for this composite article**. Accordingly, the combination cameras/laser gun joined to a computer will be classified according to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3(c) which states "when goods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or 3(b), they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which occurs last in numerical order among those which equally merit consideration". **Applying GRI 3(c), the LaserCam NT is classifiable under heading 9031 since it occurs last in numerical order of the competing headings.**

The LaserCam NT software specifications and Operator's Manual are being returned as requested.

The applicable subheading for the LaserCam NT will be 9031.49.9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 which provides for measuring or checking instruments, appliances and machin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other opt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other; other. The rate of duty will be 3.5 percent ad valorem.

You have stated in your letter that the Laser Gun LTI 20-20 is made in the United States. Please note that United States manufactured products are entitled to enter free of duty as American goods returned, upon compliance with Section 10.1, Customs Regulations (19 C.F.R. §10.1). Heading 9801 allows products of the United States when returned after having been exported, without having been advanced in value or improved in condition by any process of manufacture or other means while abroad, to be entered free of duty. Regarding the applicability of heading 9801, HTSUS, if the Laser Gun LTI 20-20 meets the criteria listed above, the laser gun may be eligible for a duty exemption under subheading 9801.00.10, HTSUS.

(2) 둘째, 제8517호(통신 기능)와 제8528호(모니터 기능) 등이 주 기능이 아닌 보조적인 기능으로서 주 기능 검토 시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제8517호와 제8528호가 보조적인 기능으로 인용된 분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2의 HS품목분류의견서와 국내 품목분류위원회의 여러 물품에 대한 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제8517호(통신기기)의 기능이 보조적 기능으로

판단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셀카봉, 스마트 태그의 '통신 기능'은 각각의 '이어폰', '카메라 봉', '위치신호 태그'라는 주된 기능 또는 본질적인 특성에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므로 제8517호가 아닌 각각의 고유한 주된 기능 또는 본질적인 특성(제8518호, 제9620호, 제8531호)으로 분류된 바 있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

8518.30	**1.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마이크가 내장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으로, 호스트 장치와 체어링 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충전 케이스, 충전 케이블 및 사용 설명서와 함께 소매용 세트로 포장됨. 이어폰에는 오디오 파일 재생을 제어하고, 호스트 장치에 전화 받거나, 거절 또는 끊기를 지시하는 기능이 있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3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적용**

9620.00	**2. 철제 무선 셀카봉** **한쪽 끝에 손잡이, 전원버튼과 충전 포트가 있고, 다른 쪽 끝에 마운트가 있다. 스마트폰은 조정 가능한 홀더에 탑재할 수 있다. 블루투스와 같은 오픈 무선통신기준을 통해 스마트폰의 운영 시스템과 동기화할 수 있다. 스틱의 버튼을 눌러 셀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더 넓은 각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스틱은 25cm에서 102cm까지 연장 가능하며 머리 부분은 회전이 가능하다. 디지털 카메라와도 사용이 가능하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적용** 

■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16
시행일자	2023년 11월 9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531.80-9000호

경합세번	제8517.62-1020호, 제8531.80-9000호, 제8543.70-9090호
연도	2023년
회	06
품명	GALAXY SMART TAG ; EI-T5300BBEGKR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열쇠나 가방, 반려견 목줄 등에 걸어두고 필요 시 블루투스***통신**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연동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로, 폰에서 신호를 보내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탑재돼 있음. - 내장된 BLE* 칩에 내장된 MAC** 주소값을 스마트폰이 인식해 스마트폰 앱에서 지도 형태로 해당 기기의 위치를 알려주며, 폰에서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울려 해당 위치를 알려줌. * 저전력 블루투스 BLE(Bluetooth Low Energy), 장애물 없이 최대 120m까지 **통신** 가능 ** 네트워크망에서 개별 기기를 구분짓는 고유한 ID 값으로, 와이파이, 랜카드, 비디오 게임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에 내장돼 있음. ㅇ 물품 사양 - **통신 방식 및 통신 거리 : Bluetooth 5.0, 최대 120M(장애물 없이 최대)** - 배터리 : 탈착식 CR2032(동전 형태) - 크기 및 무게 : 40.9 × 40.9 × 9.9(㎜), 14g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제8531.80호에는 '그 밖의 전기식의 음향이나 시각신호용 기기'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고 하면서, "(B)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sound signalling apparatus)·혼(horn)·사이렌(siren) 등 : 음향은 전기적인 작용이나 전자 소리 발생기로 리드(reed)를 진동시키거나 원반을 회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 여기에는 공업용 사이렌·공습 사이렌·선박용 사이렌 등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에 사용된 통신기능은 기기 간에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주 기능은 전기적인 음향신호를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데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로 봐 관세율표 제8531.80-9000호로 분류함.

또한「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2의 HS품목분류의견서와 국내 품목분류위원회 사례에서 제8528호(모니터)의 기능이 보조적 기능으로 설명됐다.

다음과 같이 어린이용 로봇 장난감과 홈로봇의 '모니터 기능'은 각각의 '완구' 및 '서비스 로봇'이라는 주된 기능에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므로 제8528호가 아닌 각각의 주된 기능인

'완구(제9503호)' 또는 '서비스 로봇(제8543호)'이라는 전체 기능으로 분류된 바 있다.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

9503.00	**14. 어린이용 로봇 장난감** 즐거움과 교육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용 로봇 장난감.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대화형 놀이와 학습이 가능하도록 애플리케이션으로 페어링 된다. 이 로봇은 반응하는 감정의 모습을 제공할 수 있다. 사양 : - 크기 : 15cm(L) X 14cm(W) X 22cm(H) - 무게 : 960g - 최대 속도 : 0.5m/s - 카메라 : 해상도 5Mpx, 시야각 81도 FOV - 마이크로폰 : 듀얼 MEMS 마이크로폰 - 디스플레이 : 터치스크린을 갖춘 4.5" TFT 컬러 HD 디스플레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적용(제16부 주 제1호 거목)**

또한, 다음 개인용 서비스 로봇에 대한 품목분류위원회 사례에서는 '통신 기능'이 홈로봇 기능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통신기기(제8517호)에서 제외됐음을 알 수 있다.

■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819
시행일자	2020년 5월 28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543.70-9090호**
경합세번	**제8517.62-9000호, 제8543.70-9090호**
연도	2020년
회	02
품명	홈로봇 LG CLOi ; ARHC81W
물품 설명	ㅇ 개요 -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용 서비스 로봇의 일종으로, 스피커, 마이크로폰, **LCD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센서(조도, 가속도, 터치), 스테핑 모터, 통신 부품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정보검색, 가전기기 제어, 교육 컨텐츠 영상 재생, 음악 재생 등을 위해 음성신호 전(前)처리* 및 신호변환 처리해 무선통신망(와이파이, 블루투스)을 통해 송수신하는 기기

	* 서버에서 음성인식을 하기 위한 잡음, 잔향, 에코 성분 제거 ※ 크기 : 27.9cm(L) X φ17.7cm(W), 중량 : 약 2.0kg ㅇ 주요 기능 - 정보 검색 : 날짜, 요일, 시간, 날씨 음성 안내 등 정보 검색 - 가전기기 제어 :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로봇청소기, 냉장고, 조명 등 제어 - **영상 재생 : 교육 컨텐츠(아들과 딸 북클럽) 등 동영상 재생** - 음악 검색 및 재생 ㅇ 주요 구성 요소별 기능 - 본체(바디) : 주요 부품(LCD, 렌즈, 회로 PCB)을 잡아주는 프레임 역할을 하며, 모션 구동, 터치, 스피커 기능 등 포함 - AP(Application Processor) : 디스플레이, 카메라, 와이파이·블루투스 IC 지원, 모션 MCU와 통신 - **디스플레이 모듈 : 영상정보 표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할(표정, 검색정보, 교육컨텐츠 표시)** - 보이스 IC : 음성 인식을 위한 전처리 기능. 서버에서 음성 인식을 위한 호출 및 데이터 변환 - 모션 MCU(Micro Controller Unit) : AP와 통신, 모터 드라이버 제어해 스테핑 모터 동작 - 오디오 IC : 스피커 구동을 위한 오디오 앰프 - 센서 • 조도 센서 : LCD 자동 밝기 구현용 • 가속도 센서 : 모션 움직임용(예 : 제품 넘어졌을 경우 충격 전달 시 “아야”, “아파”) • 터치 센서 : 헤드 부분 터치 시 반응용(예 : 머리 쓰다듬으면 “네”, “헤헤” 등)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스피커, 마이크, LCD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센서(조도, 가속도, 터치), 모터 등으로 구성된 복합기계로서, 정보 검색, 가전기기 제어, 교육 컨텐츠 영상 재생, 음악 재생 등을 위한 물품임. 쟁점물품은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의 컨텐츠 내용에 따라 정보 검색, 가전기기 제어, 교육용 영상 재생, 음악 재생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 기능과 관계 없이 본건 물품 전체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개인용 서비스 로봇’에 해당하며,** 또한, **무선자료 송수신(통신), 음성 전처리 및 신호변환 기능은 본건 홈로봇이 작동하기 위해 단순히 무선방식의 데이터 입출력 수단으로서 활용된 것임.**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43.7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쟁점 서비스 로봇은 타 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16부 또는 제85류의 주 규정에서 제외되지

	않는 전기기기로서 제8543호에 해당함.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의 컨텐츠 내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용 서비스 로봇**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관련 이미지	

특이한 점은, 위 홈로봇은 복합다기능기계로서 주 기능을 찾지 않고 전체로서의 기능으로 분류됐는데, '서비스 로봇'이라는 제8543호의 고유 기능에 해당되므로 전체를 제8543호로 분류한 것이다.

즉, 복합다기능기계라고 해도 우선적으로 주 기능을 찾기보다는 어느 특정한 호의 용어에 그 전체 기능이 인용되는 경우 주 기능을 찾지 않고 호의 용어대로 분류하라는 것인데, 이는 다음 제16부 총설에서 규정돼 있다.

> **■ 제16부 해설서 총설**
> (VI)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와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 … <중략> …
>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

통상적으로는 복합다기능기계의 경우 주 기능을 찾아 품목분류를 결정하는데, '통신'과 '모니터' 기능이 다른 본질적인 목적 수행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통신기기(제8517호)' 또는 '모니터(제8528호)'로 분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Ⅳ. 시사점

이번 호에서 이동식 교통 및 속도 단속레이저의 WCO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품목분류를 정리할 수 있었고, 주 기능 여부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볼 수 있었다.

즉, WCO 결정 물품은 보통 '단속카메라'로 불리므로 제8525호의 카메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레이저를 통한 속도 측정기에 주 기능이 있는 것으로 대다수 국가가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호에서 언급한 교통 및 속도 단속레이저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참고해 무역업체, 신고인, 관세청 등에서는 유사한 제품의 구조, 기능 및 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출입신고 시 적정한 세번으로 분류하기를 희망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면제 편물 풀오버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싱글리트(singlet)의 사전적 의미는 '몸 윗부분에 입거나 특정 스포츠를 할 때 착용하는 소매가 없는 옷'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매가 없는 윗옷으로 '민소매'라고 흔히 이야기한다. 민소매는 속옷, 운동용, 외출용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입을 수 있다. 운동용으로 특히 선호되는데 어깨와 소매 부분이 걸리적거리지 않아 활동성이 좋다. 남녀불문하고 헬스장 패션으로도 선호된다.

이번 호에는 소매가 없는 옷의 세번 정정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상의로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에 해당하는 제6109.10-9000호로 신고했다.

물품의 특징은 넥라인이 원형이고 허리 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는 민소매 형태다.



먼저, 제6109호를 살펴보자.

제6109호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정방형·보트 모양·V자형이며 트임(opening)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들 의류는 날염·편직·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그림·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

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제61류 주 제5호 :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제6109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넥라인에 트임이 없고(단추, 깃 등이 없어야 함), 의류 밑부분에 허릿단이나 조이는 부분이 없는 의류다. 해당 물품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싱글리트, 그 밖의 조끼 등에 해당하는 제6109호에 분류하기 쉬우나 허리 부분에 밴드가 있으므로 제6109호에 분류할 수 없다.

● 허릿단에 밴드가 있어 제6110호로 분류된 사례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VEST OF COTTON	6109.10-9000 (FCN1 0%)	Pullover of cotton, knitted	6110.20-0000 (FCN1 5.8%)

중세 유럽, 돈 대신 후추를 냈다?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한식에 다진마늘이 빠지지 않듯이 나라마다 음식의 맛을 살리기 위해 애용하는 향신료가 있다. 지금은 세계 곳곳의 향신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중세시대 유럽에서 향신료는 그야말로 사치품이었다.

그중에서도 후추는 사회적 신분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물건이자 당시 귀족들의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인기 향신료였다. 금값보다 비쌌다고 전해지는데 금이나 약재용 저울에 달아 거래했으며, 한때는 화폐 기능까지 했을 정도였다. 유럽인들은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이용해 고기가 최대한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도록 했지만, 기후 풍토 등의 이유로 유럽에서는 후추가 잘 자라지 않는 관계로 귀할 수밖에 없었다.

후추를 포함해 귀한 향신료 가격이 폭등하자 결국 유럽인들은 멀고 험한 육로 대신 바닷길로 향신료의 천국 인도에 가는 방법을 찾게 된다. 콜럼버스와 같은 탐험가들은 인도를 찾아 항해 끝에 아메리카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후추 대신 고추를 발견했는데, 이를 새로운 후추라고 여겼다. 중세 이전 고대에는 후추는 약재로 취급되기도 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생리통 완화제로 후추를 권장했고, 해독제로 사용되기도 했다.

현대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요리할 때 먼저 소금이나 간장을 넣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육류, 해산물, 채소, 곡류 등 모든 종류의 요리에 거의 예외 없이 후추가 필수로 들어간다. 물론 오늘날에는 후추·육두구(肉荳蔻)·정향(丁香) 등 향신료는 일부 유럽 또는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재배하고 있다.

관세율표에서 후추는 고추(건조한 것·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와 함께 제0904호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에 분류된다.

제0904호 해설서에서는 "후추에는, 쿠베브 페퍼(파이퍼 쿠베바 : Piper cubeba)(제1211호)를 제외한 파이퍼(Piper)속의 모든 후추식물의 종자와 열매를 포함한다. … <후략>"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 조제되지 않은 신선 냉장 등의 고추는 제0709호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0710호 '냉동채소'에 분류된다.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25호_2025.4.7.

최신개정법령

법률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시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훈령

- 「원스톱 수주·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901호, 2025.4.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해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제1장에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화장품의 날)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기재사항을”을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제1항 중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899호, 2025.4.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8호 중 "제11조 제2항"을 "제11조 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검사성적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4조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관세청고시 제2025-22호, 2025.4.2.)

선박용품과 항공기용품 관련 관세청 행정규칙을 통·폐합하여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22호, '25.4.2.)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 제정 이유 ◇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 2024.4.25.)에 따라 ①「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2024-40호, 2024.9.10.)와 ②「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2023-5호, 2023.1.9.)를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

◇ 주요 내용 ◇

□ 선박용품 등의 하역 절차(제4조~제17조)
○ 선박용품 반입등록, 적재·하선 등 절차
○ 특정 선박용품 등의 처리

□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절차(제18조~제29조)
○ 항공기용품 반입등록, 적재·하기 등 절차
○ 특정 항공기용품 등의 처리

□ 보세운송 관리(제30조~제33조)
○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 도착보고 및 관리

□ 선박용품 등과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제34조~제41조)
○ 용도외처분, 폐기, 보수작업, 양수도 및 재고관리
○ 선박 내 판매내역 관리

□ 항공기내판매품 관리(제42조~제46조)
○ 판매자 의무, 판매대상 품목 및 수량, 교환·환불 처리
○ 판매내역, 사전예약내역 제출

□ 세관장의 관리감독(제47조~제53조)
○ 적재수량 관리, 검사, 서류 보관 및 제출, 연간 재고조사

□ 행정제재(제54조)
○ 주의처분 및 경고처분 사유
○ 엄중경고 사유 및 업무정지 이상 행정제재 절차

[본문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18호, 2025.4.1.)

◇ 개정 이유 ◇

□ 해당고시 본문과의 정합성 보완을 위해 고시제명 등을 정비하고,「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고시에 맞추어 조문 정비
□ 전략물자 등 수출신고 절차 및 수출심사 기준 명확화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제공 신설
□ 외부기관으로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 명확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등

◇ 주요 내용 ◇

□ 정합성 보완을 위한 고시 정비(고시제명, 제1조, 제9조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를「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로 고시제명 변경, 목적·준용 규정에서 수입 관련내용 삭제

□ 「대외무역법」등에 맞도록 조문 정비(제1조~제4조, 제6조~제8조 개정)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등", "상황허가 대상"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 변경
○ 관세청 타고시제명 변경사항 및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
* ①「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②「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③ 고발(송치)의뢰 → 조사의뢰

□ 신고인의 전략물자 등 수출신고 절차 명확화(제3조 개정)
○ 전략물자 등 수출신고 전에 갖춰야 할 요건*과 수출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요건승인번호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
* 수출허가 → 수출허가, 상황허가 또는 허가면제
** 전략물자허가번호 → 전략물자 등 허가번호, 전문판정 발급번호, 자가판정 등록번호 또는 사전신고서(허가면제) 판정번호

□ 세관직원의 전략물자 등 수출심사 절차 보완(제4조 개정)
○ 세관장은 통관과정에서 전략물자 등 수출허가(허가면제 포함) 이행 여부 외에 통제대상 물품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구체화
○ 세관장이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자가판정서 또는 전문판정서를 신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제공 근거 신설(제4조 개정, 별표 신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서류심사 또는 현품검사 선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세부기준 마련
*「대외무역법」 제22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등을 구축하여 전략물자 판정 등 자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정 능력을 갖춘 기업 정합성 보완을 위한 고시 정비(고시제명, 제1조, 제9조 개정)

<[별표] 통관절차상의 혜택(제4조 제3항 관련) 기준 신설>

<table>
<tr><th>현행</th><th colspan="4">개정</th></tr>
<tr><td rowspan="6"><신설></td><td rowspan="2">혜택 기준</td><td colspan="3">자율준수무역거래자</td></tr>
<tr><td>A</td><td>AA</td><td>AAA</td></tr>
<tr><td>「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 현행 수출통제품목에 대한 서류제출 비율에서 우측 지정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td><td>50%</td><td>70%</td><td>100%</td></tr>
<tr><td>「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 제외
* 현행 수출통제품목에 대한 검사 비율에서 우측 지정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td><td>50%</td><td>70%</td><td>100%</td></tr>
<tr><td colspan="4">※ 수출통제품목 선별 이외 나머지 선별기준은 제외대상이 아님</td></tr>
</table>

□ 허가기관으로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 명확화(제5조 개정)

○ 관세청이 통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전략물자 등 허가기관이 「관세법」*에 따라 통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

* 제116조(비밀유지)제1항 제7호 :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국제간 세관 협력 절차 정비(제8조 개정)

○ 해외 관세당국과의 원활한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국제 공조를 위해 별도의 관세청장의 승인 절차 삭제 및 관세청장의 재량 부여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령

■「원스톱 수주·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무총리훈령 제887호, 2025.3.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기업의 수출·수주 관련 애로사항을 하나의 창구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설치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업 총괄·조정 및 수출·수주 관련 기업 애로사항 접수·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31일'에서 '2026년 3월 31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835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5년 3월 31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264호, 2025.4.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며, 기술 보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술심사 기한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며, 설문조사 시행주기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시 사전 통보를 신설하는 한편, 서류 보완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 범위 및 필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영 제7조의2)

나. 산업부장관이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경우, 통지의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 (영 제13조의2)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말소에 대한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 (영 제13조의3)

라.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수출에 대해 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영 제16조의2)

마.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대상기관에 통보 (영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바.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반행위와 인수합병 금액등을 고려하여, 1일 1천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영 제18조의8, 별표2)

사. 수출 승인 자료 제출 협조 거부, 보호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횟수별 부과기준 등을 정함 (영 별표1)

아. 침해신고를 받은 산업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신고한 내용이 침해행위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 (영 제20조 제2항)

자.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도록 함 (영 제13조의2 제6항,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4항)

차.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1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대상기관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도록 함 (영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 심사시, 서류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함 (영 제13조의2 제5항, 제15조 제3항, 제16조 제3항, 제18조의3 제3항, 제18조의4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강정웅 사무관 앞
- 이메일 : ii03274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265호, 2025.4.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가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 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3, 별지 제1-1호서식).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4, 별지 제1-2호서식).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및 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5, 별지 제1-3호서식).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6, 별지 제1-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강정웅 사무관 앞

- 이메일 : ii03274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274호, 2025.4.1.)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전담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72조에 따른 플랜트수출촉진기관(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을 지정하여 사업수행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전담기관이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규정 마련(안 제9조)

다. 전담기관과 간접보조사업자 간 협약의 체결·변경·해지 절차 규정 마련(안 제10조~제12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통상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수정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seonhwa81@korea.kr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 팩스 : 044-203-480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전화 : 044-203-5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91호, 2025.4.1.)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1호(2024.12.19. 시행)로 2024.12.19.~2025.4.18. 4개월의 기간 동안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으로 덤핑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 고려 시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관세법 시행령」제6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2024.12.19.~2025.7.18. 7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 대상 물품 :

- ㅇ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
-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4.1010, 7219.35.9000, 7220.20.1090, 7219.32.9000, 7219.34.1090, 7219.90.1010, 7220.20.9000, 7219.33.1010, 7219.34.9000, 7219.90.1090, 7220.90.1010, 7219.33.1090, 7219.35.1010, 7219.90.9000, 7220.90.1090, 7219.33.9000, 7219.35.1090, 7220.20.1010, 7220.90.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베트남	1.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과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6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티브이엘 (TVL Joint Stock Company) 나. 티브이엘 스틸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11.37
	3. 그 밖의 공급자	4.79

라. 부과기간 : (당초) 2024. 12. 19. ~ 2025. 4. 18. (4개월)
(변경) 2024. 12. 19. ~ 2025. 7. 18.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 044-215-4432
- 팩스 : 044-215-8076
- 이메일 : mosf1204@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96호, 2025.4.4.)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96호)의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22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20.0000호,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2.50 ~ 25.04%로 함

●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이하 '슈캉 및 그 관계사') 가. Jiangsu Shukang Packing Material Co., Ltd. 나. Jiangsu Hengchuang Packing Material Co.,Ltd. 다. Jiangsu Shuangliang Technology Co.,Ltd. 라. Jiangsu Shuangliang Group Co., Ltd. 마. Jiangyin Hongda Trading Co., Ltd. 바. Jiangsu Shuangliang Group Co., Ltd. Sales Branch	3.30%
	2.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이하 '데크로 및 그 관계사')	2.50%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가. Guangdong Decro Package Films Co., Ltd. 나. Guangdong Decro Film New Materials Co., Ltd. 다. Decro New Material (H.K.) Co., Ltd. 라. Guangdong Shunde Decro Yiyun Technology Ltd. Liability Company	
	3. Anhui Guofeng New Material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19%
	4. Zhongshan New Asia Adhesive Product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04%
	5.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Zhejiang Kinlead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나. Kinwin Plastic Industrial Co., Ltd. 다. Ultra Fast Development Limited	25.04%
	6.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Suzhou Kunlene Film Industries Co. Ltd. 나. Yunnan Kunlene Film Industries Co. Ltd.	25.04%
	7. 그 밖의 공급자	7.40%
인도네시아	8. 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9%
	9. 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2%
	10. PT Trias Sentosa Tbk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03%
	11. PT Lotte Packaging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0.00%
	12. 그 밖의 공급자	5.98%
태국	13. A.J. Plast Public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49%
	14. Thai Film Industries Public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0.55%
	15. 그 밖의 공급자	10.55%

※ 비고: 제7호, 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

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s9802102@korea.kr, FAX :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97호, 2025.4.4.)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 ㅇ 관세품목분류(HSK) :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 ② 냉간 압연을 한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바오스틸 및 그 관계사)	27.91%
	2. Jiangsu Shagang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장수사강 및 그 관계사)	29.62%
	3.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샹탄스틸 및 그 관계사)	38.02%
	4.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사이노 인터내셔널)	38.02%
	5. 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샤먼 아이티지)	38.02%
	6. 그 밖의 공급자	31.69%

라. 부과기간 : 2025. 4. 24. ~ 2025. 8. 23.(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 044-215-4432
- 팩스 : 044-215-8076
-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① 논문 원고
② 논문투고 신청서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 의 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